

2017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[서비스업]

■ 대 상 :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
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
- 위험성평가가 인정사업장과 고용노동부·공단·민간위탁기관의 감독·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(16년월)

■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정항목	배 점	비 고
● 공통 적용 항목 : ①~⑦번	90점	○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(1 또는 2) 1. 위험성평가 인정서 2. 고용노동부, 공단, 민간위탁기관의 감독, 점검, 기술지도 증빙자료(공문, 보고서, 점검결과 등) ※ 위의 1 또는 2 파일이 첨부된 온라인 신청 건만 접수되며 미 첨부된 파일이 있을 경우 반려됨
● 지역 자율 항목 : ⑧번	10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20점	○ 대상 : 처음으로 클린사업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
② 부산지역 고위험 업종 (사고재해율 상위 10대 중업종)	최대 20점	1.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0점 2. 수상운수업,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18점 3.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6점 4. 창고업 14점 5. 기타의각종사업(각급사무소, 건설업본사, 음식 및 숙박업 등) 12점 6.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·퀵서비스업 10점 7. 오락·문화및운동관련사업 8점 8. 도·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6점 9. 통신업 4점 10.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2점
③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	15점	1. 15점 : 1명 사업장 2. 14점 : 2명 사업장 3. 13점 : 3명 사업장 4. 12점 : 4명 사업장 5. 11점 : 5명 사업장 6. 10점 : 6명 사업장 7. 9점 : 7명 사업장 8. 8점 : 8명 사업장 9. 7점 : 9명 사업장 ※ 신청 시점의 공단 공식 통계 기준
④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(고령자, 산재장애인, 외국인)	최대 10점	○ 취약계층 근로자 1명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 ○ 아래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(기타 파일 배점 없음) - 고령자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 또는 '16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※ 대상자 : 만 55세 이상(1961년 출생자까지만 배점) - 산재장애인 : 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 등급 서류 - 외국인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※ 고용·산재보험 명부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'5' 또는 '6'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배점
⑤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협의로 인정한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사업장 (노사문화대상, 일학습병행제 등)	10점	○ 고용노동부 협의 후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우수기업 사업장에 배점 ※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확인서 첨부 시 배점 없음
⑥ '17년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 또는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	10점	○ '17년도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자료 파일 첨부 시 배점 - 제출자료 : 시정지시서 또는 고용노동부 과태료 납부고지서 ○ '17년도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사업장에 배점
⑦ '17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	5점	○ '17년도에 이수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파일 첨부 시 배점('1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배점 없음)
⑧ 재해다발 사업장	최대 10점	○ '14년~'16년도 재해건수 1건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

※ 주의 사항

1. 신청 시 첨부한 증빙파일 내용에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추후 클린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2.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자수, 업종, 재해율 등은 신청시점의 공식통계 기준을 반영함
3. 동점사업장은 위 항목 중 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→⑧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4. 위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추후 공단 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5. 클린 지원 후 10년 경과한 사업장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최초 지원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